

FIND칼리지 운영 규정

제정 2018. 5. 3.

제3차 개정 2024. 2. 2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상지대학교 학칙」 제2조 및 제61조의2, 「직제규정」 제7조의2에서 정한 FIND칼리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4.2.29.)

제2조(조직) ① FIND칼리지에는 FIND칼리지학부, 자유전공학부, 교양교육센터, FIND-MYWAY 센터, 교양영어센터, FIND칼리지의 행정 및 학사를 지원하는 교학지원팀을 둔다.

② FIND칼리지에는 학장, 각 센터장, 주임교수, 책임교수, FIND칼리지학부장, 자유전공학부장, FIND칼리지학부 및 자유전공학부 소속 교원, 행정직원을 둔다.

③ 학장, 센터장, 주임교수, 책임교수, 학부장의 임기는 각각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FIND칼리지학부 소속 교원은 각 센터의 연구회 위원으로서 소정의 책무를 수행한다.

⑤ FIND칼리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단과대학 학과소속 교원을 FIND칼리지학부 소속 겸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4.2.29.]

제3조(업무) ① FIND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FIND칼리지 발전계획 수립, 과제 추진, 점검, 개선
2. 교양교육과정의 기획, 편성 및 운영, 평가, 개선
3. 핵심역량 기반 학습 성과 평가 및 환류(교양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편)
4. 학제적 융합교육 기획, 편성 및 운영, 평가, 개선
5. 사회적 흐름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목 개발
6. 교양교육 지원체계 구축, 운영, 평가, 개선
7. FIND칼리지 내 학부(과)의 지원체계 구축, 운영, 평가, 개선
8. 교내 교양교육 이외에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교육원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운영

② 교양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체계 구축 및 운영
2. 교양교육과정 기획 및 발전전략 수립
3. 교양교과목 개발, 편성, 운영, 평가, 개선 업무
4. 그 밖에 센터 운영목적에 부수되는 사항
5.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양교육연구회를 둘 수 있다.

③ FIND-MYWAY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같이가치찾기 교육과정 담당
2. 같이가치찾기 매뉴얼 개발, 운영, 평가, 개선 업무
3. 그 밖에 센터 운영목적에 부수되는 사항
4.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FM연구회를 둘 수 있다.

④ 교양영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양영어 교과목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
2. 교내외 위탁(연수) 교육 운영

3. 외국어 교육 관련 교재 개발
4. 외국어능력평가시험(모의토익 등) 운영
5. 그 밖에 센터 운영목적에 부수되는 사항
6.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양영어연구회를 둘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4.2.29.]

제4조(학장 등의 임명) ① FIND칼리지 학장은 FIND칼리지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교수 이상의 일반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FIND칼리지학부장은 FIND칼리지학부 소속 조교수 이상의 일반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자유전공학부장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조교수 이상의 일반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- ⑤ 주임교수는 교양영역별로 1명씩을 두며, FIND칼리지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.
- ⑥ 책임교수는 기초교육과목별로 1명씩 두며, FIND칼리지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.
- ⑦ 자유전공학부 전공탐색 멘토위원은 타 학과(부) 소속 교원 중에서 학과(부)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위촉한다.

[전문개정 2024.2.29.]

제5조(주임교수 및 책임교수의 임무) ① 주임교수는 교양영역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내용, 교육방법 등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관련 학과와 협의하여 교강사 배정, 수업관리, 교과과정의 검토 및 그에 대한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② 책임교수는 기초교육과목의 교육목표, 교육방법, 교재개발 등 교과목 운영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24.2.29.)
- ③ 전공탐색 멘토위원은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전공탐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FIND칼리지운영위원회) ① FIND칼리지의 발전계획, 교육목표, 학사운영,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FIND칼리지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FIND칼리지운영위원회는 FIND칼리지학장, 각 센터장, FIND칼리지학부장, 자유전공학부장, 주임교수, 책임교수 등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4.2.29.)

제7조(교양교과위원회) ① 교양교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4.2.29.)

1. 교양교과목의 방향과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
2. 교양교과목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(교육 수요자 요구 또는 만족도 조사 포함)
3. 교양교과목 과정의 영역 구분, 개설학기 구분 등 교양교육 편성에 관한 사항
4. 교양교과 개편에 관련된 실무팀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양교과에 관한 주요 사항

② 교양교과위원회는 FIND칼리지학장과 미래교육혁신원장을 당연직으로, 주임교수, 인문사회/이공/예체 등 계열을 대표하는 협력학과 전임교원 3인, 전문성을 지닌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FIND칼리지학장으로 한다. (개정 2024.2.29.)

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교양교과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 후 시행한다. 단, 과목명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FIND칼리지학장이 내부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9호, 2022.6.13.)

이 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565, 2024.02.29.)

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